2022. 10.

창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

창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 67

제출년월일 : 2022. 10. 19.

제 출 자:창원시장

1. 제안이유

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맞추어 필수업무와 종사자의 범위를 지정하고,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및 지원계획 수립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「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·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·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반영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대책 및 지원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(안 제명)

「창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→

「창원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」

나. 다양한 재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한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게 '필수업무'와 '필수업무 종사자'를 정의함(안 제2조)

- 필수업무: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업무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창원시장이 정하거나 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
- 필수업무 종사자: 필수업무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창원시장이 정하는 사람
- 다. 사전 예측이 어려운 재난의 특성을 고려하여 3년마다 수립하던 지 원계획을 재난 발생 시 수립하도록 함(안 제5조)
- 라.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에 서 대행하도록 함(안 제8조)
- 마.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「창원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의 심의사항에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계획 및 주요 정책을 심의하도록 정함(안 부칙 제2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 법령: 붙임 1

- 1) 「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 3조, 제5조, 제9조~제11조
- 2) 「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 제3조 및 제5조 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- 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22. 9. 15.~10. 5.)결과: 제출 의견 없음
- 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3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- 4) 성별영향평가 결과: 개선사항 없음
- 5) 현행 조례: 붙임 2

창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창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창원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·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재난"이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.
- 2. "필수업무"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8조에 따른 창원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창원시장(이하 "시 장"이라 한다)이 정하거나, 「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·지원에 관

한 법률」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.

- 3. "필수업무 종사자"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8조에 따른 창원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.
- 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시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 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,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 해야 한다.
 - ② 시장은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업 무 종사자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- 제4조(적용대상) 이 조례는 창원시(이하 "시"라 한다)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서 종사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.
- 제5조(지원계획의 수립 등) ① 시장은 재난 발생 시 창원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해야 한다.
 - 1.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
 - 2.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
 - 3.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

- 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.
-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- 제6조(실태조사) ① 시장은 지원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필수 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.
- 제7조(지원사업) ①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 - 1.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
 - 2.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, 연구
 - 3.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
 - 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 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 관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 법

제9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「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 에 따른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한다.
- 제9조(포상 등)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·지원 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포상 등을 할 수 있다.
- 제10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,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- 제3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4. 「창원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8조제1 항에 관한 사항

붙임 1

관계 법령

□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·지원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"재난"이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.
- 2. "필수업무"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.
- 3. "필수업무 종사자"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(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으로서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.
-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(이하 "국가등"이라 한다)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,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등은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보호·지원 수준보다 유리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9조(지역위원회) 지역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소속으로 시·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(이하 "시·도 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고, 시장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소속으로 시·군·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(이하 "시·군·구 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 - 1.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,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
 - 2. 해당 지역에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

- 3. 해당 지역의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
- 4.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- 제10조(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시·도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·도지사가 되고, 시·군·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된다.
 - ② 시·도 위원회 및 시·군·구 위원회(이하 "지역위원회"라 한다)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 - 1. 해당 지역에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4조에 따른 대규모재난이 발생한 경우
 - 2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
 - 3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-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제11조(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(이하 "지원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 -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 - 1.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
 - 2.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
 - 3.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
 - 4.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
 - 5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
 - 6.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
 -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확정한 후 이를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,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별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⑤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지역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.
 - ⑥ 그 밖에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

제3조(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
- 2.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
- 3.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
- 4. 그 밖에 지역 노·사·민·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**제5조(구성)**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 - ③ 당연직 위원은 시 노사업무담당 국장이 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 이 경우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.
 - 1. 노동단체를 대표하는 사람
 - 2. 사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사람
 - 3. 지방고용노동 관서를 대표하는 사람
 - 4.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
 - 5. 노사관계·고용·경제·사회문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 - ④ 협의회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.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, 서기는 노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.
 - 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.

붙임 2

현행 조례

□ 창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각종 전염병 및 기후위기 등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노동여건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의 생활과 생명, 안전과 사회기능유지 및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재난"이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.
- 2. "필수업종"이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주민의 생명과 안전 및 최저 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등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.
- 3. "필수노동자"란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에 따른 노동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.
- 4. "대면업무"란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, 의료, 돌봄, 안전, 물류, 운송 등 사회기 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노동활동을 말한다.
- 제3조(시장의 책무) 창원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4조(적용대상)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, 지역공동체 유지, 시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정한 업종으로 창원시(이하 "시"라 한다)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.
- 제5조(실태파악) ① 시장은 필수업종 선정,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, 근무환경, 처우 등에 대한 실태파악을 실시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파악을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.
- 제6조(기본계획수립 등) ① 시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

-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
- 2. 분야 및 종사자별 시책,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
- 3. 필수노동자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
- 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- 제7조(지원사업) 시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 - 1.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
 - 2.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, 연구
 - 3.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
 - 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제8조(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1.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
 - 2.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
 - 3.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
- 제9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 위원장은 소관 부서의 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 -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, 위촉직 위원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 - 1.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
 - 2.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
 - 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- 제10조(위원의 임기)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- 제11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 - 1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 - 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 - 3. 직무대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
- 제12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 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13조(위원회 운영)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,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 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, 간사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으로 한다.
 -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- 제14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,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- 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<부칙 생략>